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55
----------	------

발의연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서다운 의원

찬 성 자 : 조규식, 신혜영, 최미자, 손도선,
신진미, 설재영, 정인화, 최병순,
최지연, 강정수, 박용준(11인)

1. 제안이유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서구”에서 “서구의회”로 정비하여 운영 주체가 서구의회임을 명확히 하고, 현행 운영 실정에 부합하도록 의원 구성, 임기, 의장단 구성 등 주요 규정을 조정하여 청소년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우수 의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참여 동기를 증진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조례 목적 조항 및 정의 조항 등에서 “서구”를 “서구의회”로 정비하여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1조, 제2조)

- 다. “청소년 의원”을 “의원”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 라. 의원의 임기를 1년 이내로 하고, 임기 중 3분의 1 이상 결원 발생 시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마. 의장단 구성 인원을 조정함(안 제6조)
- 바.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방식을 정비함(안 제7조)
- 사. 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 라. 입법예고 : 2026. 3. 11. ~ 3. 16.(5일간)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구”를 “서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구”를 “서구의회”로 한다.

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제3조제1호 중 “구의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청소년 의원”을 각각 “의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청소년 의원”을 각각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한다.

④ 의원구성에 있어 임기 중 3분의 1 이상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하여 결원을 충원한다. 이 경우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득표로 당선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의회”를 “청소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 외 3개”를 “3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임위원회는 청소년 의원의”를 “의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를 “구성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재적의원”을 “회의는 재적의원”으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포상)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u> <u>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권과 청소년문제 · 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 중 · 고등학교(입학예정자 포함) 및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자 중에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2. 삭 제</p> <p>3. “대전광역시 <u>서구</u> 청소년의</p>	<p style="text-align: center;"><u>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소년의회</u> <u>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서구의회</u> ----- ----- ----- -----.</p> <p>제2조(정의) ----- -----.</p> <p>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p> <p>나.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p> <p>3. ----- <u>서구의회</u> -----</p>

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들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
2. 3. (생략)

제4조(구성) ① 청소년의회 의원은 (이하 “청소년 의원”이라 한다)은 25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청소년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이 경우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장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 이주배경 청소년 등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등) ① 청소년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3조(기능) -----
-----.

1. 아동·청소년 -----

2. 3.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
-----의원-----
-----.

② 의원-----

-----.

제5조(임기 등) ① 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한다.

② 청소년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청소년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원-----

-----.

1. 2. (현행과 같음)

③ 의원-----

-----.

④ 의원구성에 있어 임기 중 3분의 1 이상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하여 결원을 충원한다. 이 경우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의장단 구성) ① -----
----- 1명-----
-----.

② -----

----- 득표로 당선된다.

<삭제>

③ ----- 청소년의회-----
-----.

⑤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의 직무대행은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제7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운영위원회 외 3개 이하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청소년 의원의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제8조(회의) <신설>

① 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
----- . <후단 삭제>

제7조(상임위원회) ① -----
-- 3개 -----

----- .

② 의원은 -----
----- .

③ -----
----- 구성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후단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

----- 1 이상 -----
----- .

②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회의는 재적의원 -----

-----.

제12조(포상) 구의회 의장은 청소
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
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
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